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하여

법학관 헌법연구소장 이토 마코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제정된 일본국 헌법도 입헌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중'과 '입헌주의' 사상은 피와 눈물로 획득한 인류의 지혜이며, 일본국 헌법은 인류가 이루어 낸 귀중한 재산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에는 서구 근대 헌법과는 다른 독자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적극적 비폭력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일본국 헌법 전문※, 9조).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지만 일본국 헌법은 군사력이라는 폭력이 아닌 외교와 비군사 국제공헌 등 이성애 입각한 비폭력 수단으로 국민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군사력으로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타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증오와 폭력의 연쇄를 초래할 뿐, 결코 진정한 국제 공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서구 제국과 공통된 '개인의 존중'이라는 가치관을 일본국 헌법에서는 한층 더 발전시켜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인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개개인을 개인으로 존중하는 이상 그 개개인의 생명이 소중히 지켜지고 공포와 결핍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권리로써 명확하게 보장한 것입니다. 이는 전쟁은 최대의 인권침해이며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평화주의'는 '국민주권'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함께 일본국 헌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입니다.

(J.S.)

※일본국 헌법 전문(발췌)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경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專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평화적 생존권을 통하여 현대 국제사회에서 전쟁 없는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에 상당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세계의 각 국민에게 공통되는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적 생존권은 다른 인권과는 달리 일본국의 의사만으로는 충분히 보장할 수 없고, 각 국가가 평화롭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일본국 헌법 전문이 '한결같이 공포와 결핍을 피하고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의 향유주체를 '전 세계 국민'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상 평화적 생존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추구할 이념 내지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장 총강에서 평화적 통일정책, 국제평화 유지의 노력과 침략전쟁의 부인, 국제법규 존중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평화적 생존권'이란 기본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마369결정은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그것을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 내용이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J.S.)